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0

발의연월일: 2024. 10. 21.

발 의 자: 우재준 • 이성권 • 조지연

김기웅 · 김형동 · 주진우

김위상 · 김소희 · 임이자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102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기준"을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로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등록,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3조제1항제2호 중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을 "제8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5조제2항제22호 중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안전인증) ① (생 략)	제84조(안전인증) ① (현행과 같			
	승)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				
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	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로 제조하는 경우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			
사업 등의 지원) ① (생 략)	사업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	②			
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의 요건을 갖추어 <u>고용노동부</u>	<u>특별시장·광역</u>			
<u>장관</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u>·도지사"라 한다)</u>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는</u>
취소하거나,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
1. ~ 3.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
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
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
<u>다.</u>
<u></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시·도지사는
· ⑦ 시·도지사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등록,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아 하다
<u>야 한다.</u>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 저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 7.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기
 - ① (생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

	<u>⑧</u> <u>제7항</u>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
레	
: : : :	3. ~ 7.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21. (생 략)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
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
록

23. ~ 41. (생략)

③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 22. -----지원

23. ~ 4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